

국립축산과학원 산업체 협력연구 참여기업 선정결과 알림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400호, 2023. 10. 10.)』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국립축산과학원)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 참여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6일
국립축산과학원장

□ 선정 결과

연번	과제명	부서명	선정 업체명
1	가축의 도축공정별 AI 딥러닝 기반 로봇 개발	축산푸드 테크과	(주) 로스
2	한우 번식우의 사료 영양수준 실태분석 및 조절에 의한 번식효율 개선 연구	한우연구 센터	카애 퓨
3	디지털 기반 돼지 임신 여부 자동판정 및 이상행동 탐지 기술 연구	양돈과	(주) 엠센

□ 금후계획

○ 선정과제에 대한 과제협의회 및 협약 추진(2025. 3. 6. ~ 3. 28.)

*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기재란 부족 시 공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산업체 협력 연구과제 연구협약서

- 사업명 :
- 내역사업명 :
- 협력연구과제명 :
- 협력연구개발비

구분		1년차	2년차	...	계
협약주관자	시험연구비	천원	천원		천원
협약상대자	현금	천원	천원		천원
	현물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해당될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약당사자
 협약주관자 : ○○○○○과학원장
 협약상대자 : 협력산업체 대표

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력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협력연구계획서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별첨 1의 협력연구계획서에서 정한 바와 「산업체 협력 연구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협력연구에 필요한 기술정보와 의견 등을 수시로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③ 본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연구항목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발표 및 결과물의 귀속) ① 협약상대자가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주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보고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의 협력연구에 관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협력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의 결과물은 협약주관자의 소유로 한다.

제4조(지식재산권 출원 및 소유) ① 연구개발 결과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 출원은 공동명의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출원 시 협약상대자의 지분율은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결정한다.
 ③ 협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분권은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

다.

제5조(권리 양도의 제한 등) ① 협약상대자는 농촌진흥청장의 동의 없이는 위 협력연구과제의 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약상대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협약상대자는 농촌진흥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③ 협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협력산업체 외의 자의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협력산업체의 대표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협약상대자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개량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협력연구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협약상대자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개량한 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관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제6조(기술료 산정) ① 협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료 예정가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기술료 예정가격 = 공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② 제1항의 산식에 사용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및 지분율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
2. 제품의 판매단가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예상가격의 평균
3. 점유율 : 단위제품 생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 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지분율 :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분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제7조(협약의 변경)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주관자가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약상대자로부터 연구목표, 연구기간, 협력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8조(협약의 해약)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협약상대자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연구개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협약상대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4. 협약상대자가 협력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졌거나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위험부담)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협력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별첨 1의 협력연구계획서 상 분담한 연구내용별로 각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비밀준수)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본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상대자는 별첨 2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협약주관자는 사업의 독려, 연구진행 상황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연구기간동안 수시로 연구내용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협약상대자는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약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약상대자에 대하여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주관자의 해석에 의한다.

위 협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협약주관자 : (해당 기관 주소)

농촌진흥청 00000과학원장 000 (직인)

협약상대자 : (협력산업체 주소)

협력산업체 대표 000 (직인)

<별첨 1> 협력연구계획서 1부

<별첨 2> 협약상대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별첨 3> 협약상대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윤리 서약서 각 1부

<별첨 1>

협력연구계획서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력연구과제명							
공동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화				휴대폰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연도	시험연구비	협력산업체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개월)					

1. 협력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
-

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

(2) 국내수준

-
-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협력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

보안서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협력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협약주관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협약주관자에게 반납하며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년 월 일

서약인

(인)

농촌진흥청 ○○○과학원장 귀하

연구윤리 서약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협력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협력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3. 협력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며 이의 미준수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행정제제 또는 법적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
4.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농촌진흥청 ○○○과학원장 귀하